

제 1313호
1986. 9. 10

발행인 : 서울특별시청
편집인 : 서울특별시청
전화 : 781-6111-3
서울특별시 종합관리국
화 : 785-3337

인	공도계장
인	토도계장
인	

시보

차 례

◎ 고 시

제 654 호 : 도로교통법예외의한운전자준수사항고시개정 3

제 655 호 : 도로교통법예외의한통행제한고시개정 5

제 657 호 :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7

◎ 공 고

제 500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실효 8

제 505 호 : 제 2 중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 8

제 507 호 :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종탈 9

(이면계속)

공																			
발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 구공고

- 강동구제 84호 : 관인사용승인 9
- 동대문구제 43호 : 직인계각 10

◎ 사 령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영주	동작구파견 정파조전수조사요원 ('86. 9. 9-'86.11.30)	남지도쓰레기 종합처리장	지방기계장 (7등급)
최효신	강동구파견	"	지방기지원 (8등급)
고영기	"	"	"
주용환	강남구파견	"	"
최상철	"	"	"
박영철	"	"	"
문영완	"	"	지방기계장 (8등급)
김사중	"	"	지방기지원시보 (9등급)
윤석환	"	"	"
윤재순	"	"	"
곽수섭	강동구파견	"	"
이영춘	"	"	"
김성환	"	"	"
정영택	동작구파견	"	"
이지덕	"	"	"
이승영	강동구파견	"	"
김연오	강남구파견	"	"
장현목	"	"	"
오광목	"	"	"
박현규	"	"	지방기계수시보 (10등급)
◎ 1986년 9월 10일 령제 39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종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사보

<p>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승객이 승차한 상태로 급유하여서는 아니된다."</p>
<p>10. 제차의 운전자는 타인의 유도를 받거나 후방의 안전을 확인한후가 아니면 후진하여서는 아니되며, 후진시 경음기(후진벨러디포함)를 울려서는 아니된다.</p>	<p>17. 2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는 경우·강설로 노면이 미끄러울 때에는 운전자 이외의 자를 승차시켜서는 아니된다.</p>
<p>11. 제차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측단 30미터 이내에서는 알지모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의 측방을 통과하여 그 앞으로 진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p>	<p>18.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운전자는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 자동차의 후면유리 좌측 하단에 "초보운전"이라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p>
<p>12. 제차의 운전자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있지 않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야 한다.</p>	<p>가.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자라 함은 운전경험이 없는자가 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항은 예외로 한다.</p>
<p>13. 제차의 운전자는 정지하였다가 전진할 경우 후진하였다가 전진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한종류의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면허를 새로 취득한 자. (2)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 자.</p>
<p>14.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장표시주(표지판 또는 승차대)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정차하여야 하며, 안전을 확인한후가 아니면 승강구의 문을 열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간이라 함은 취득후 계속 운전한 기간을 말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운전을 시작한 날로부터 1년간을 말한다.</p>
<p>15.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정류소에서 승객을 승·하차 시킨후 출발할때 앞에서 정차한 다른 여객자동차를 앞질러 가서는 아니된다.</p>	<p>다. 초보운전 표지판은 세로 10센티미터, 가로 30센티미터 아크릴로 제작하여 붙이고 필수 있게 하며 밤색 바탕에 녹색글씨로 표시한다.</p>
<p>16. 여객자동차의 운전자는 운행중</p>	

<p>19. 동절기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에는 삼, 곡괭이, 모래주머니 (버스, 화물차, 대형특수차는 5홉입 5개이상, 택시, 합승 3/4톤 이하의 화물차는 5홉입 2개이상) 및 케인 또는 스노우타이어를 휴대하여야 하며, 눈길이나 빙판길을 운행할 때에는 케인 또는 스노우타이어를 사용하여야 한다.</p>	<p>20. 운전자는 전파를 이용한 자동차원격시동제어기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고시는 1986.9.11부터 시행한다.</p> <p>2.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86.3.19) 는 이를 폐지한다.</p>
---	---

신 · 구조문대비표

구	신
<p style="text-align: center;">운전자 준수사항</p> <p>1-19 생략</p> <p>20. 서울특별시 고시 제 116 호 ('77.4.20), 제 254 호 ('82.7.9), 제 541 호 ('85.8.12) 는 이를 폐지한다.</p> <p>21. 이 고시는 1986.9.11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운전자 준수사항</p> <p>1-19 화동</p> <p>20. 운전자는 전파를 이용한 자동차원격시동제어기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1. 이 고시는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p> <p>2.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1 호 ('86.3.19) 는 이를 폐지한다.</p>
<p>◎서울특별시고시제 655 호</p> <p style="text-align: center;">도로교통법에의한통행제한고시개정고시</p> <p>도로교통법 제 6 조 제 1 항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9. 10 서울특별시장</p> <p>1. (통행제한)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통행제한은 차종별, 요일별, 시간별, 지역별로 통행을 제한하되 다음과 같이한다.</p>

가. 제한내용			
차 종	제한시간	통행제한구역	비 고
1.5톤미만 화물자동차	07:00~10:00	도심권 및 부도심권	
1.5톤이상 3.5톤미만 화물자동차	07:00~10:00 18:00~21:00	상 동	단, 토요일은 07:00~10:00 12:00~15:00
3.5톤이상 화물자동차	07:00~22:00	상 동	
고압가스 운반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 운반자동차	24시간	도심권	
10톤이상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07:00~22:00	울림피대로구간 (하일동 시제-행주대교남단)	

나. 제한지역의 도심권 및 부도심권은 다음과 같다.

(1) 도심권

(가) 시청기점 반경 5킬로미터내와 교통압력이 가중되는 반경 7킬로미터내의 다음 도로와 그 지역내의 도로

한강대교북단-대건로-양화대교북단-양화로-동교동-교차로-연서로-홍은교차로-세검정길-북악터널-정릉길-길음교-미아3거리-중앙로-중앙3거리-회기로-취경교차로-회기교차로-시립대입구-정릉교차로-신답교차로-정찰빌딩입구교차로-성동서앞-한양여고-성동교-삼표골

새안3거리-성수대교북단-강변2로-한남대교북단-강변3로-한강대교북단 연결지점간

(나) 고압가스 탱크로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 운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화물자동차는 성수대교북단-강변2로-한남대교북단-강변3로-한강대교북단-대건로-양화대교북단-양화로-동교교차로-연희로-홍은교차로-세검정길-북악터널-정릉길-길음교-미아3거리간 도로는 07:00 ~ 10:00 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한다.

(2) 부도심권 (도로)

영등포구 중 도시기능이 집중 지역인 다음 도로

(가) 한강대교 남단-노량진로-구 구청교차로-시장교차로-양남교차로 간

(나) 문래교차로-영등포역앞-구 구청앞 교차로 간

(다) 시장교차로-영등포역앞 간

(라) 구 구청교차로-우신국교앞간

2. (예외규정) 통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다음과 같다.

가. 긴급자동차

나. 제한구역내 통행허가증을 소지한 자동차

다. 가스운반 탱크모리 화물자동차 및 폭발물운반 자동차와 장래차량 제외한 10톤 미만인 화물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요일 및 공휴일에 한하여 통행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정기토선 화물자동차) 정기토선 화물자동차는 도심권 및 부도심권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

부 칙

1. (폐지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136호 (79.4.1)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고시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호 (84.2.23)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 제한고시는 폐지한다.

2. (시행일) 이 고시는 1986.9.11

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고시제 657 호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693 호 (84.11.23) 로 시행허가 및 동 고시 제 148호 (86.3.12) 로 시행허가 변경된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동사업 시행허가 변경 하엿기 고시 한다.

2. 관제도서는 구로구청 도시경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6. 9. 10.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구로구교척동 103-4 일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소매시장)

- 교척산업용품종합상가

다. 시행면적: 35,342㎡

라. 사업시행자: 주조, 성명

1) 당초: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건설(주) 대표 문경일

2) 변경: 용산구후암동 358-17

동국산업(주) 대표 문경일

<p>다. 사업시행규모</p> <p>1) 건축면적 : 17,645.59㎡</p> <p>2) 건축연면적 : 당초 50,874.76㎡, 변경 50,886.84㎡</p> <p>바. 사업시행기간 : 84.11.29 - 86.12.31</p> <p>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 지번 및 지목, 지적 소유권리명세 : 해당없음</p> <p>아.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외 관계인 주소, 성명 : 해당없음.</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px; margin: 0 auto; padding: 5px;">공 고</div> <p>◎서울특별시공고제 500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실효</p> <p>전기공사업 제 30 조 제 5 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실효 되었기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하 여 이를 공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9.10. 서울특별시 장</p>
--	--

다 음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실효일자	사 유
200	광원전기 공 사	조 상 래	중구만리동 62-11	'86.9.5	제 2 종 전기 공사업 폐지

<p>◎서울특별시공고제 505 호</p> <p>제 2 종 전기공사업면허영업정지공고</p> <p>전기공사업법 제 29 조 제 2 항 2</p>	<p>호에 의거 아래 제 2 종 전기공사 면 허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하였기 동법 제 42 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86. 9.10. 서울특별시 장</p>
--	---

아 래

면허번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처분내용	사 유
197	대한엔진 이 어 링	김 영 리	관악구봉천 6 동 852-2	영업정지 30일 (86.9.10 -86.10.9)	전기공사업법 제 12 조 1 항 위반 (기술 자 변경 미신고)

◎서울특별시공고제 507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공고

우리가 사업시행하여 환지처분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납입고지서중 반송된 고지서를 서울특별시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사무처리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한다.

1986. 9.10.

서울특별시 장

- 1. 사업지구명: 영동제 1.2 지구, 신당 지구, 청량리지구
- 2.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장
- 3. 납부기한: 영동 1.2 지구:

1986년 9월 30일

(신당 지구 : 1986년 12월 31일
청량리지구 :

- 4. 공시송달사유: 주소 또는 저소불명
- 5. 공시송달대상자 목록명세: 서울특별시 구획정리과, 중구청, 동대문구청,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에 공함

4. 관인의 인영 (폐기 및 개작인)

6. 기타사항: 공시송달 대상토지 소유자는 우리시 구획정리과에 와서 고지서를 재발부반야 가까운 시중은행에 납부하거 바람.

구 공 고

◎강동구공고제 84 호



관인 사용승인공고



강동구 잠실제 5동장 (민원사무전용) 관인 및 제인을 아래와 같이 폐기 및 개작승인하고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 6조에 의거 공고한다.

1986. 9.10.

강 동 구 정 자

- 1. 관인호: 강동구잠실제 5동장관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
- 2. 사용개시일: '86.9.11
- 3. 폐기처분일: '86.9.10

인	개	작
영		
공인명	잠 실 제 5 동 장 관 인 및 제 인	

<p>◎ 동대문구공고제 43 호</p> <p>직 인 개 각 공 고</p> <p>서울특별시 동인규칙 제 2 조 에 의 거 다음과 같이 동직인 및 제인용</p> <p>3. 인 영</p>		<p>개 각 하 였 기 에 동 제 6 조 에 의 거 공 고 한 다</p> <p>1986. 9. 10.</p> <p>동 대 문 구 창 장</p> <p>1. 직인명 이문계 2 동장인 (민원사무전용) 및 제인</p> <p>2. 사용개시 및 제인일자: 1986년 9월 15일</p>	
인 영	개	각	폐 기
	 		
공인명	이 문 계 2 동 장 직 인 및 제 인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사 령</div>			
◎ 1986년 9월 9일자		별제 393 호	
상 명	발 령 사 랑	현 부 서	직 급
권 위 정	동작구파견 정화조전수조사요원 ('86.9.9 ~ '86.11.30)	난지도쓰레기종합 처리장	지방전기장 (7 등급)
인 영 우	강남구파견		지방기계장 (7 등급)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고영주	동작구파견 정파조전수조사요원 ('86. 9. 9-'86.11.30)	남지도쓰레기 종합처리장	지방기계장 (7 등급)
최효신	강동구파견	"	지방기지원 (8 등급)
고영기	"	"	"
주용환	강남구파견	"	"
최상철	"	"	"
박영철	"	"	"
문영완	"	"	지방기계관 (8 등급)
김사중	"	"	지방기지원시보 (9 등급)
윤석환	"	"	"
윤재순	"	"	"
곽수섭	강동구파견	"	"
이영춘	"	"	"
김성환	"	"	"
정영택	동작구파견	"	"
이지덕	"	"	"
이승영	강동구파견	"	"
김연오	강남구파견	"	"
장현목	"	"	"
오광목	"	"	"
박현규	"	"	지방기계수시보 (10 등급)
◎ 1986년 9월 10일 령제 395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우종학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사보에 임함. 2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사보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이현수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박기원에 입함. 3호봉을 합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선박기원
신대식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장(기능직 7등급)에 입함. 5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인천지방해운항만청	선장(기능직 7등급)
김기현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방선원(기능직 9등급)에 입함. 7호봉을 급함.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명함.		선원(기능직 9등급)

◎ 1986년 9월 5일자

령제 396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임상욱	지방토목기사보에 추서함.	강남구	지방토목기원

◎ 1986년 9월 8일자

령제 397호

성명	발령사항	원부서	직급
김동규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제 1, 2호의 규정에 의거 "전책"에 처함.	주택개발과	지방별정직 7급상당
전승권 송희철	서울특별시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제 33조제 1항 (지방공무원법 제 69조 제 1, 2, 3호 해당)의 규정에 의거 "정직 1월"에 처함.	관악구 서울역공원 관리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지방사육원
정해남	"감봉 1월"에 처함.		

◎ 1986년 9월 9일자		령서 408 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의	직 위
국윤호	한강준공행사 현장지휘본부 기동근무를 명함 ('86.9.9 - 9.15)	올림픽 기획 담당관	체육진흥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영복	"	사회지도담당관	사회정화2계장	"
김태상	"	보건위생과	식품지도계장	"
최재후	"	청소과	작업관리1계장	"
김영호	"	영등포구	총무과장	"
조광치	"	급수과	배수계장	지방토목기과

시 율 특 별 시 장